

民 法

第四編 親族・第五編 相續

改正法案 및 理由書

1974. 8

汎女性・家族法改正促進會

民 法

第四編 親族・第五編 相續

改正法案 및 理由書

1974. 8

汎女性・家族法改正促進會

改正案을 내면서

一 家族法改正을 통한 새로운 社會良俗과

發展的인 倫理의 摸索 一

어느 時代나 社會를 막론하고 男性과 女性間에는 일의 區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점차로 社會의 發展에 편승하여 이러한 男女間의 役割區分을 忘却하고 男性의 役割과 機能에 重要性을 賦與하고 擴大시킴에 따라 男性이 女性보다 優越하다는 男性優越傳統이 形成되어 왔다.

이 男性의 優越的 傳統은 各時代, 各社會 및 各國家의 獨特한 歷史와 傳統아래서 그 나름대로의 男性優越의 制度的 基盤을 形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女性은 人間平等의 原則에서 疎外되고 各其의 傳統과 社會制度 및 慣習에 의해서 不平等을 體質化해야 했고 그들의 天賦의 分野를 喪失해야만 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傳統과 制度가 固化되어 女性의 地位가 男性에 隸屬되어 있는 地位가 아닐지라도 현저히 落後되어 있음은 事實이다. 女性地位의 落後性이 民族의 發展이나 國家發展에 얼마나 障礙가 되는 要素인가는 再論의 餘地가 없겠다.

따라서 여기에 人間平等의 原則을 實現하고 社會 및 國家構成의 基本單位로서의 家族을 韓國의 傳統內에서 民主化하기 위하여 家族法改正을 提案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立場을 被歷하고자 한다.

첫째로 人間平等原則을 俱現하려는 立場이다. 世界人權宣言 第1條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自由롭고 同等한 尊嚴성과 權利를 가지고 있다.”라고 宣言하고 있고, 이어서 第2條는 “모든 사람은 種族, 人種, 性別, 宗教, 政治의 혹은 其他의 意見, 民族의 혹은 社會的 身分 財產, 家門 혹은 其他 地位如何로 인하여 하등 差別을 받음이 없이 모든 權利와 自由를 享有할 資格을 갖는다.”라고 明示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現行家族法에서의 男性과 女性의 非合理的인 差別規定은 合理的인 制度化로, 또 人間不平等에 基本을 둔 規定은 人間平等의 바탕에서 再調整되어야 하겠다.

둘째, 우리나라 固有의 社會價值觀을 再構成하려는 意圖가 있다. 특히 우리社會의 價值觀을 形成시켜온 高麗나 李朝社會에 있어서도 家族 및 社會內에서 男性과 女性의 役割이 명확히 區分되어 있었고 서로 調和의 關係에 있었다. 물론 男女의 役割이 완전히 同等했다는 意味는 결코 아니다. 分明히 差等關係는 있었지만 女性이 男性에 대해 隸屬의 關係는 아니었고 또 男性이 犯할 수 없는 女性의 權利와 自由가 어느정도는 있었다는 意味다.